

영등포구의회
제216회 임시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檢 討 報 告 書

【영등포구청장 제출】



2019. 9. 27.

行 政 委 員 會
專 門 委 員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檢 討 報 告 書

1. 경 과

의안 제145호로 2019년 9월 19일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9년 9월 2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

2. 제안이유

도로법 등 상위법령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여 시유재산과 구유재산의 일관성있는 행정재산 관리를 도모하고, 효율적인 재산관리로 구 주요시책을 지원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도로점용허가 대상 개정

- ‘광고탑, 광고판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삭제하고,
- ‘신·재생에너지 설비(「서울특별시 에너지 조례」에 따라 설치한 것에 한정한다.)’ 추가(안 제2조)

나. 도로법 등 상위 법령에 따라 규정 정비

- 변상금 부과·징수 대상자 개정(안 제4조제1항)

- 점용료 및 변상금 분할납부시 이자 적용 규정 개정(안 제5조제2항)
- 다. 도로법 등 상위 법령에 기 규정되어 있거나 반하는 규정 삭제
- 제6조(점용료 등의 조정), 제8조(점용료 등의 가산금 및 독촉), 점용료 등의 소액부징수를 규정한 제9조제1항, 제12조(수수료의 징수)제1항, 제2항 삭제
- 라. 도로점용허가 대상 개정에 따라 [별표]의 점용료 산정기준 정비
- ‘신·재생에너지 설비’는 토지가격에 0.01을 곱한 금액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도로법」

나. 예산조치: 해당 없음

다. 입법예고 (2019. 7. 25. ~ 8. 14.) : 의견 없음

5. 검토의견

-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상위법령에 맞게 조문을 정비하고 조례의 미비한 부분을 수정·보완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 주요내용으로는,
 - 안 제2조에서는 도로점용허가 대상 시설물에 대해 규정하였으며,
 - 안 제3조에서는 별표 점용료 산정기준을 정비하였으며,

- 안 제4조에서는 변상금의 부과·징수자에 대해 규정하였으며,
 - 안 제6조, 제8조에서는 점용료 등의 조정, 가산금 및 독촉의 중복 규정을 삭제하였음.
- 검토결과,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여 법적 타당성, 예측가능성을 확보하여 구민의 신뢰도를 제고할 것으로 보이며, 도로점용허가 대상 시설의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처리 기준을 보완하여 구민의 생활에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도로를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한 조례안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그밖에 상위법 저촉이나 자구에 별 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임.

참 고 자 료

1

도로법

제69조(점용료의 강제징수) ① 도로관리청은 점용료를 내야 할 자가 점용료를 내지 아니하면 납부기간을 정하여 독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점용료의 납부가 연체되는 경우에 도로관리청은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가산금에 관하여는 「국세징수법」 제21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국세"는 "점용료"로 본다.

④ 도로관리청은 점용료를 내야 하는 자가 그 납부기한까지 점용료를 내지 아니하면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제72조(변상금의 징수) ① 도로관리청은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를 점용하였거나 도로점용허가의 내용을 초과하여 도로를 점용(이하 이 조에서 "초과점용등"이라 한다)한 자에 대하여는 초과점용등을 한 기간에 대하여 점용료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금액을 변상금으로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초과점용등이 측량기관 등의 오류로 인한 것이거나 그 밖에 도로 점용자의 고의·과실로 인한 것이 아닌 경우에는 변상금을 징수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도로관리청은 초과점용등의 사실을 해당 도로 점용자에게 통보하고, 그 통보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점용료 상당액을 징수한다.

③ 도로관리청은 제2항에 해당하는 도로 점용자가 그 사실을 통보 받은 날부터 3개월 내에 적법한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면 도로관리청이 초과점용등의 사실을 해당 도로 점용자에게 통보한 날부터 변상금을 산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도로점용허가 요건을 충족할 수 없어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 제67조, 제69조부터 제71조까지의 규정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변상금의 징수, 과오납 변상금의 반환 및 이의신청에 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각각 "변상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자"로, "점용료"는 각각 "변상금"으로 본다.

제103조(수수료의 징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국토교통부령 또는 해당 행정청이 속해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1. 제36조에 따른 도로공사의 허가를 신청하는 자
2. 제61조에 따른 도로점용허가의 신청, 도로점용허가의 기간 연장 허가 또는 변경 허가를 신청하는 자
3. 제77조제1항 단서에 따라 도로 운행의 허가를 신청하는 자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의 감면에 관하여는 제68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점용료"는 "수수료"로 본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10조제3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는 위탁받은 업무에 대한 수수료의 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④ 제110조제3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가 제3항에 따라 수수료 기준을 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다.

2 도로법 시행령

제55조(점용허가를 받을 수 있는 공작물 등) 법 제61조제2항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법 제107조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사업에 관계되는 점용인 경우에는 협의 또는 승인을 말한다)를 받아 도로를 점용할 수 있는 공작물·물건, 그 밖의 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 11. 24., 2015. 8. 11., 2017. 12. 5.>

1. 전주·전선, 공중선, 가로등, 변압탑, 지중배전용기기함, 무선전화기 지국, 종합유선방송용단자함, 발신전용휴대전화기지국, 교통량검지기, 주차측정기,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태양광발전시설, 태양열발전시설, 풍력발전시설, 우체통, 소화전, 모래함, 제설용구함, 공중전화, 송전탑,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2. 수도관 · 하수도관 · 가스관 · 송유관 · 전기관 · 전기통신관 · 송열관 · 농업용수관 · 작업구(맨홀) · 전력구 · 통신구 · 공동구 · 배수시설 · 수질 자동측정시설 · 지중정착장치(어스앵커) · 압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3. 주유소 · 수소자동차 충전시설 · 주차장 · 여객자동차터미널 · 화물터미널 · 자동차수리소 · 승강대 · 화물적치장 · 휴게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과 이를 위한 진입로 및 출입로
4. 철도 · 궤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5. 지하상가 · 지하실(「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1조제1호에 따라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 통로 · 육교,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6. 간판(돌출간판을 포함한다), 표지, 깃대, 현수막, 현수막 게시시설 및 아치. 다만, 현수막 게시시설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관리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7. 버스표판매대 · 구두수선대 · 노점 · 자동판매기 · 현금자동입출금기 · 상품진열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8. 공사용 판자벽 · 발판 · 대기소 등의 공사용 시설 및 자재
9. 고가도로의 노면 밑에 설치하는 사무소 · 점포 · 창고 · 자동차주차장 · 광장 · 공원, 체육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유류 · 가스 등 인화성 물질을 취급하는 사무소 · 점포 · 창고 등은 제외한다)
10. 「장애인 · 노인 ·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편의시설 중 높이차이 제거시설 또는 주출입구 접근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11.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작물 · 물건 및 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설치하는 공사장,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과 이를 위한 진입로 및 출입로
12.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에서 규정한 것 외에 도로관리청이 도로구조의 안전과 교통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한 공작물 · 물건(식물을 포함한다) 및 시설로서 국토교통부령 또는 해당 도로관리청이 속해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것

제69조(점용료의 산정기준 및 조정) ① 고속국도 및 일반국도(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이 도로관리청이 되는 일반국도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71조제7항에서 같다)에서 징수하는 법 제66조제1항에 따른 점용료(이하 "점용료"라 한다)는 별표 3의 점용료 산정기준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고속국도 및 일반국도 외의 도로에서 징수하는 점용료는 별표 3의 점용료 산정기준에서 규정한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③ 도로를 계속하여 2개 연도 이상 점용하는 경우로서 제1항 및 법 제68조에 따라 산정한 연간 점용료가 전년도에 납부한 연간 점용료보다 100분의 10 이상 증가하게 되는 경우에는 전년도에 납부한 연간 점용료보다 100분의 10이 증가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5. 12. 22., 2016. 11. 15.>

제71조(점용료의 부과·징수 및 반환) ① 도로관리청은 법 제66조제1항에 따라 점용료를 부과·징수하려는 경우에는 점용료 납부 의무자에게 납입고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도로점용의 목적이 되는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가 2인 이상인 경우로서 해당 토지나 건물의 관리인 또는 전체 소유자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이 있는 경우 도로관리청은 그 관리인 또는 대리인에게 납입고지서를 발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점용료를 부과할 때 점용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도로점용허가를 할 때에 점용료의 전액을 부과·징수하고, 점용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매 회계연도 단위로 부과하되, 해당 연도분은 도로점용허가를 할 때에, 그 이후의 연도분은 매 회계연도 시작 후 3개월 이내에 부과·징수한다. 다만, 연간 점용료가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연 4회 이내에서 분할하여 부과·징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남은 금액에 대해서는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0조제3항 후단에 따라 산출한 이자를 붙여야 한다.

③ 도로관리청은 점용료 납부 의무자가 원하는 경우 점용기간 전체 또는 남은 점용기간에 대한 점용료를 일시에 부과·징수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점용료의 금액이 1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점용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7. 12. 5.>

⑤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법 제66조제2항에 따라 점용료 반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점용료 반환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도로관리청에 점용료 반환 신청을 할 수 있다.

⑥ 도로관리청은 제5항에 따라 점용료 반환 신청을 받으면 법 제73조 제1항에 따른 원상회복 여부를 검토·확인한 후 30일 이내에 점용료 반환 여부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⑦ 법 제66조제4항에 따른 고속국도 및 일반국도 외의 도로에 관한 점용료의 반환 절차·방법 등 점용료 반환에 필요한 사항은 제5항 및 제6항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